

# 개 표 일 반

## 1. 개표방법

- 우리나라는 「공직선거법(이하 ‘법’)」 제11장 개표 관련 규정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로 모든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합니다.
-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·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합니다.
- 일반적인 개표절차는 접수부 → 개함부 →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→ 심사집계부 → 개표상황표 확인 → 위원검열 → 위원장 공표 → 개표결과 공개 순으로 진행됩니다.

### ‘투표지분류기’는 보조수단

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(개표의 진행)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로, 개표절차에서 ‘투표지분류기 운영부’에서만 투표지 분류를 보조합니다.

- **(투표지분류기 운영부)**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①정당별·후보자별 유효표와 ②재확인 대상 투표지(유·무효 판단 보류상태)로 구분된 후 심사집계부로 인계되며,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결과는 확정된 개표결과가 아닙니다.
- **(심사집계부)** 1차적으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‘심사집계부’의 개표사무원이 ①유효표 확인, ②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유효표·무효표로 구분하여 정당별·후보자별 최종 유효투표수 및 무효투표수를 집계한 후 개표상황표에 기재합니다.
- **(위원검열·위원장 공표)** 위원검열 절차에서 개표소에 출석한 모든 위원이 개표상황표와 실제 투표지 묶음을 비교·대조하며, 이상이 없으면 각 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 위원 검열이 완료된 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며, 공표 단위로 외부에 공개됩니다.

## 2. 개표소 설치

- 구·시·군선거관위는 선거의 수,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합니다.

- 통상 구·시·군선관위는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지만 개표사무 수행에 필요한 넓은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구·시·군선관위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개표소 출입이 가능한 사람

-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·직원, 개표사무원,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며,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.
  - ① 구·시·군선관위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합니다.
  - ② 구·시·군선관위는 공무원, 교직원, 공공기관 직원,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합니다. 개표사무원은 구·시·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합니다.
  - ③ 정당·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 투표함을 구·시·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,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·인수과정,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합니다.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, 개표상황을 정당·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,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·시·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- ④ 정당·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국민도 구·시·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.

- ⑤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·시·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**개표관람증**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
- ⑥ 언론사 취재·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·취재·보도할 수 있습니다.
- ⑦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·소방·전기 등 관련 **협조요원**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.
- ⑧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·시·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.